



의정활동보고서



제267회 임시회(2014. 2. 6 ~ 2. 17)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 처음 열리는 제267회 임시회를
300만 도민과 함께 청마의 진취적인 기상으로 힘차게 시작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비회기 중에도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한 현장 확인과, 일본 교과서 독도 명기 관련 규탄성명
발표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도의회는 3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전개와 연구하며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이스탄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예산 10조원 확보, 일자리 6만 6천개 창출,

투자유치 5조 1천억원 달성,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고 기관 선정 등 도정에 큰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도지역 종합 1위로 평가 받는 등 도정의 여러 분야에서 경북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300만 도민을 위해 수고하신 도지사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 갑오년은 경상도 개도 700주년과, 신 도청 시대 개막,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려운 서민경제난 극복 등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FTA 대응 농어촌 경쟁력 강화, 문화 융성을 선도하는 문화경북,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경북을 실현하고, 창의적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하여 도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에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서민경제 살리기, 생활안전대책 등 도민들의 삶과 연계된 정책이 바르게 반영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도민들에게 기운찬 일들이 가득하시고, 도정이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도민이 행복해하는 경북건설을 위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300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만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2월 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1
III. 의안처리	16
IV. 민원처리	18
V. 본회의 보고사항	20
VI. 5분 자유발언	49
<input type="checkbox"/>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49
<input type="checkbox"/>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53
<input type="checkbox"/>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57
<input type="checkbox"/>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61

부 록

<input type="checkbox"/> 조례안(7건)	65
----------------------------------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67회 임시회는 2014년 2월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2월 17일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12회에 걸친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2월 6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상용 의원의 “도립의료원 경쟁력 강화 촉구”와 기획경제위원회 김봉교 의원의 “대구 취수원 관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7일(월)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경임 의원의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촉구”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의 “명품이 아닌 싸구려가 된 경북교육”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어서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6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

이 밖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어졌으며 독도수호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특별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가 있었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 다. 집회일시 : 2014년 2월 6일(목)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4년 2월 6일 ~ 2월 17일(12일간)
-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2회(누계 78회)
 - 위원회

(단위: 건)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4	1	2	3	2	1	2	1		2
누 계	446	36	57	58	49	40	55	50	55	46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목)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2. 17(월)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목) 13:30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input type="checkbox"/>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목) 16: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input type="checkbox"/>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input type="checkbox"/> 기획조정실, 경북테크노파크	
2. 7(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input type="checkbox"/> 일자리투자본부, 창조경제산업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목) 16: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감사관, 보건복지국(노인전문간호센터 포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7(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안전행정국, 여성정책관	
2. 17(월) 10: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목) 16: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2. 7(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림국 및 사업소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금) 10:30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농축산국, 동해안발전추진단, 농업기술원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목) 13: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도청이전추진본부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2. 7(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업무보고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input type="checkbox"/>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7(금) 11:00	<input type="checkbox"/> 주요 업무보고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6(목) 13:00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독도수호 관련 주요 업무보고 ○ 동해안발전추진단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 17(월) 10:30	<input type="checkbox"/> 2014년도 지방분권추진 관련 주요 업무보고	

Ⅲ. 의안처리

(단위 : 건)

구 분	접 수 (부의)	심 의 · 의 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8 (532)	8 (522)	6 (409)	2 (108)	(5)		(4)	(6)		
조 례 안	소 계	6 (325)	6 (317)	4 (229)	2 (83)	(5)		(3)	(5)	
	의회 제안	2 (159)	2 (153)	2 (116)	(37)			(2)	(4)	
	도지사 제출	4 (112)	4 (110)	2 (81)	2 (27)	(2)		(1)	(1)	
	교육감 제출	(54)	(54)	(32)	(19)	(3)				
규 칙 안	(5)	(5)	(5)							
예산 · 결산	(29)	(29)	(9)	(20)						
동의 · 승인	(45)	(45)	(43)	(2)						
건의 안	(4)	(3)	(3)				(1)			
결 의 안	(37)	(36)	(33)	(3)				(1)		
기 타 안 (청원포함)	2 (87)	2 (87)	2 (87)							

※ ()내는 제 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중 안건(6)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 달 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1, 전찬걸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2. 17, 황이주 의원 외 3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안
(’13. 4. 22, 배수향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 경북북부권내 지방법원·검찰청 신설 촉구 결의안
(’13. 8. 13, 김명호 의원 외 12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4		4	4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3 (119)			1	1		1			
의회 운영	(2)									
기획경제	1 (14)						1			
행정 보건복지	(21)									
문화 환경	(8)									
농수산	(5)									
건설 소방	2 (64)			1	1					
교육	(5)									
특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119)	4 (119)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6건(조례안 5, 기타 1)

제출·발의자 (접수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홍진규 의원 외 7인 (2014. 1. 27)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건설소방 (2014. 1. 28)
김희원 의원 외 9인 (2014. 1. 27)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지사 (2014. 1. 2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4. 1. 28)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4. 1. 28)
"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건설소방 (2014. 1. 28)

2. 조례공포 사항 : 18건

이송일	이송처	건명	공포일
2013. 12. 9	경상북도 지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2013.12.12 (제3496호)
"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97호)
"	경상북도 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94호)
"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95호)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3.12.17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13.12.30 (제3502호)
"	"	경상북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03호)
"	"	경상북도 청년 미취업자 등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504호)
"	"	경상북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3505호)
"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06호)
"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507호)
"	"	경상북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3508호)
"	"	경상북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509호)
"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510호)
"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 (제3511호)
"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제3498호)
"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499호)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500호)
"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501호)

3. 위원회 활동 사항

위원회	일시	장소	활동내용
농수산위원회	1. 27 (월)	김천, 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새도래지(해평습지) 및 AI 방역현장(김천IC) 점검 • 추진실태 확인 및 관계자 격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1. 29 (수)	도의회 도민의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규탄 및 부당한 지침 즉각 철회 요구 •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의지 표명

4. 기타 의정활동 사항

【도 단위 행사】

- 신화랑풍류 체험벨트 화랑마을 조성공사 기공식 참석
 - 일시 : 2013. 12. 18(수) 11:00
 - 장소 : 경주시 석장동 일원
 - 참석 :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이 달·최우섭 의원
- 6.25 유공자 호국영웅기장 수여식 참석
 - 일시 : 2013. 12. 18(수) 11:00
 - 장소 : 영주시청 강당
 - 참석 : 김종천 의원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도지부 만남의 장 참석
 - 일 시 : 2013. 12. 18(수) 11:00
 - 장 소 : 포항 웨딩아이린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왜관-아곡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2. 18(수) 11:00
 - 장 소 :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준공식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추재천 의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2월 정례회 참석
 - 일 시 : 2013. 12. 18(수) 15:30
 - 장 소 : 광주광역시의회
 - 참 석 : 송필각 의장

- 한국유네스코 경북지부주최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3. 12. 19(목) 10:00
 - 장 소 : 포항 목화예식장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제26회 경북중증장애인 송년위안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2. 19(목) 11:00
 - 장 소 : 구미 장애인체육관
 - 참 석 : 심정규·이태식 의원

- (사)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대구경북연합회 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3. 12. 19(목) 17:00
 - 장 소 :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 일 시 : 2013. 12. 20(금) 10:00
 - 장 소 : 경주 블루원리조트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새누리당 경북도당 2013 선출직 및 주요당직자 송년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3. 12. 20(금) 17: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종천 의원
- 의용소방대 연합회의 참석
 - 일 시 : 2013. 12. 20(금) 18:00
 - 장 소 : 구룡포청소년수련원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지질공원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12. 23(월)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제2차 Korea Water Business 포럼 참석
 - 일 시 : 2013. 12. 23(월) 14:00
 - 장 소 : 경주 블루원리조트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국지도69호선(임고-조교)도로건설공사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3. 12. 23(월) 14:00
 - 장 소 : 영천 임고면복지회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대구경북지역 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3. 12. 24(화) 07:30
 - 장 소 : 대구은행 본점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4회 국제장애인 미래포럼 참석
 - 일 시 : 2013. 12. 24(화) 10:30
 - 장 소 : 구미시 상모교회
 - 참 석 : 심정규 의원

-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광역권(접경지역)담당관 회의 참석
 - 일 시 : 2013. 12. 26(목) 11:00
 - 장 소 : 경주시청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도청신도시 행정관리 일원화 방안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12. 27(금) 14:00
 - 장 소 : 안동대 국제교류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혁신도시 이전 환영행사**
 - 일 시 : 2013. 12. 30(월) 08:30
 - 장 소 : 국립농관원 신청사
 - 참 석 : 배수향 의원

- **2013 제야의 경북대중 타종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2. 31(화) 24:00
 - 장 소 : 영덕삼사해상공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진현 위원장, 김기홍 의원

- **2014 해맞이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1(수) 07:00
 - 장 소 : 영덕삼사해상공원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제16회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참석**
 - 일 시 : 2014. 1. 1(수) 07:00
 - 장 소 : 호미곶 해맞이 광장
 - 참 석 : 장경식 의원

○ 포항 바다수영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 1(수) 10:00
- 장 소 : 영일대해수욕장
- 참 석 : 장경식 의원

○ 2014 신년 현충탑 참배 참석

- 일 시 : 2014. 1. 2(목) 07:3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새누리당 경북도당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2(목) 10:30
- 장 소 : 경북도당사무실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박진현·채옥주 위원장,
이상용·장세현·김말분·김봉교·김세호·
김희수·도기욱 의원

○ 매일신문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2(목) 12: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박진현·채옥주·장두욱·김수용 위원장,
이 달·고우현·권영만·박기진·윤창욱·이상용·
장경식·장세현·강영석·구자근·곽광섭·김말분·

김봉교·김세호·김종천·김하수·김희수·나기보·
도기욱·박권현·박태환·변우정·배수향·심정규·
윤성규·이경임·이왕식·이정호·이태식·장영석·
정영길·추재천 의원

○ 포항상공회의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1:00
- 장 소 : 포항 필로스호텔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경식·장세현·김말분·김희수 의원

○ 경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1: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 달 의원

○ 경산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1:00
- 장 소 : 경산인터블고CC
- 참 석 : 서정숙 의원

○ 구미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1:00
- 장 소 : 구미상공회의소
- 참 석 : 심정규 의원

- 영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5:00
 - 장 소 : 영천상공회의소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식 참석
 - 일 시 : 2014. 1. 6(월) 10: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세헌·김기홍·김창숙 의원
- 2014 경상북도의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6(월) 11: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274명(도의원 내외분, 도단위 기관단체장 등)
- 경상북도교육청 주관 평준화지역 고교입학 추첨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4. 1. 6(월) 11:00
 - 장 소 : 포항교육지원청
 - 참 석 : 김원석 의원
- 구미장로회 신년교례회 및 이웃사랑 나눔행사
 - 일 시 : 2014. 1. 6(월) 17:00
 - 장 소 : 구미 금오산관광호텔
 - 참 석 : 심정규 의원

- 2014 포항시 여성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4. 1. 6(월) 18:3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김희수 의원

- '13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 참석
 - 일 시 : 2014. 1. 7(화) 10: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2014 원로교육자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7(화) 11:0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2014 경북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8(수) 12:00
 - 장 소 : 경주 현대호텔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채옥주 위원장,
배수향·이경임 의원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8(수) 11:3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11(토) 11:00
 - 장 소 : 문경시 여성회관
 - 참 석 : 이시하 의원, 이경임 의원

- **2014년 새마을가족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13(월) 11:00
 - 장 소 : 구미 경상북도새마을회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윤창욱·심정규·이태식 의원

- **경북형 마을영농육성사업 관계자 워크숍**
 - 일 시 : 2014. 1. 13(월) 14:00
 - 장 소 : 안동 리첼호텔
 - 참 석 : 김명호 의원

- **(사)아름다운사회만들기 후원의 밤**
 - 일 시 : 2014. 1. 13(월) 19:0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전력기술인협회 경북 동부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4. 1. 14(화) 11:0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장경식·김희수 의원

- 포항시 체육가족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14(화) 12:0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김희수 의원
- 구미 교육 실적 발표회 참석
 - 일 시 : 2014. 1. 15(수) 14:0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구자근·박태환 의원
- 독립공원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4. 1. 15(수) 14:00
 - 장 소 : 도청 제2회의실
 - 참 석 : 서정숙 의원
- 필리핀 결혼이민여성 모국봉사단 출정식
 - 일 시 : 2014. 1. 15(수) 15:0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전력기술인협회 경북 서부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4. 1. 15(수) 18:00
 - 장 소 : 구미 GM컨벤션웨딩
 - 참 석 : 심정규 의원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4. 1. 15 ~ 1. 29
 - 장 소 : 도내 사회복지시설 71개소
 - 참 석 : 송필각 의장 등 전 의원(63명)
- **경북 의용소방대 임용장 수여**
 - 일 시 : 2014. 1. 16(목) 14:3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박권현 의원
- **경북지구JC특우회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1. 18(토) 16:00
 - 장 소 : 예천 웨딩의 전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 **해병대전우회 도연합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19(일) 18:00
 - 장 소 : 포항 필로스호텔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설맞이 장보기 행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4. 1. 21(화) 10:30
 - 장 소 : 왜관시장 및 칠곡군 사회복지시설 3개소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추재천 의원

- 포항교육지원청 실적 보고회
 - 일 시 : 2014. 1. 21(화) 13:40
 - 장 소 : 경상북도 학생문화회관
 - 참 석 : 김말분·김원석·김희수 의원

- 몽골 미래대학교 부속 중·고등학교 학생 도의회 방문
 - 일 시 : 2014. 1. 21(화) 15:00
 - 장 소 : 도의회 본회의장
 - 참 석 : 박권현 의원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일 시 : 2014. 1. 22(수) 09:00
 - 장 소 : 안동 중앙시장
 - 참 석 : 김명호 의원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 일 시 : 2014. 1. 22(수) 10:00
 - 장 소 : 성주군 일원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제214차 안전점검의 날 설명절 안전문화 캠페인 및 전통 시장 장보기
 - 일 시 : 2014. 1. 22(수) 11:00
 - 장 소 : 경주 중앙시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경북지구 JC회장단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1. 22(수) 18:30
 - 장 소 : 포항 필로스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장경식·김희수 의원

- **성주국채보상운동 기념비 제막식**
 - 일 시 : 2014. 1. 23(목) 11:00
 - 장 소 : 성주 성박숲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23(목) 11:00
 - 장 소 : 군위시장
 - 참 석 : 홍진규 의원

- **경산시 여성친화 도시 선포식 참석**
 - 일 시 : 2014. 1. 23(목) 14:00
 - 장 소 : 경산시민회관
 - 참 석 : 서정숙 의원

-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4. 1. 23(목) 15:00
 - 장 소 : 포항시 일원
 - 참 석 : 장경식 의원

- 제2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4. 1. 23(목) 15:00
 - 장 소 :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장세현·황이주 의원

-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 일 시 : 2014. 1. 24(금) 09:00
 - 장 소 : 영덕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안동 교육 실적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4. 1. 24(금) 14:00
 - 장 소 :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 참 석 : 홍광중 의원

- 제16회 성덕대학교 전문학사 학위수여식 참석
 - 일 시 : 2014. 1. 25(토) 11:00
 - 장 소 : 성덕대학교 강당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2014 캠프워커 신년교례회
 - 일 시 : 2014. 1. 25(토) 15:00
 - 장 소 : 캠프워커 에버그린 클럽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철새도래지 및 AI방역현장 점검**
 - 일 시 : 2014. 1. 27(월) 11:00
 - 장 소 : 구미 해평습지, 김천IC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곽광섭·강영석·나기보·
변우정·정영길·한창화 의원
- **신라왕궁 복원·정비 추진위원회 출범식**
 - 일 시 : 2014. 1. 27(월) 14:00
 - 장 소 : 경주시청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대학생 치매검진사 발굴관련 대학교 학과장 간담회**
 - 일 시 : 2014. 1. 27(월) 14:00
 - 장 소 : 경주 동국대 의과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설맞이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 일 시 : 2014. 1. 28(화) 10:00
 - 장 소 : 경주 감포시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1월 대구경북지역 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1. 28(화) 18:30
 - 장 소 : 대구 자금성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일본, 교과서 제작지침에 “독도는 일본땅” 명기방침 공식 발표에 따른 규탄성명서 발표**
 - 일 시 : 2014. 1. 29(수) 11:00
 - 장 소 : 도의회 도민의방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장경식·서정숙 의원

- **의원연구단체 산림산업 발전 연구회 세미나**
 - 일 시 : 2014. 2. 3 ~ 2. 5
 - 장 소 : 전남 완도군 일원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김기홍·김말분·김창숙·나현아·최우섭 의원

【시·군 단위 행사】

- **포항제철소·포항시 용곡리 마을 자매결연 행사 참석**
 - 일 시 : 2013. 12. 19(목) 14:00
 - 장 소 : 포항 흥해읍 용곡리 마을회관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 **포항교육지원청 주최 학원 및 교습소운영자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3. 12. 20(금) 10:00
 - 장 소 :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영주시 축산단체 연합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3. 12. 21(토) 11:00
 - 장 소 : 대구 아모르예식장
 - 참 석 : 김종천 의원

- 김천교육지원청 유공자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3. 12. 26(목) 10:00
 - 장 소 : 김천 다수초등학교
 - 참 석 : 나기보 의원

- 풍각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3. 12. 26(목) 11:00
 - 장 소 : 청도군 풍각면사무소
 - 참 석 : 김하수·박권현 의원

-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참석
 - 일 시 : 2013. 12. 26(목) 19:00
 - 장 소 : 영주시민문화회관 까치홀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 도청신도시 행정관리 일원화 방안모색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3. 12. 27(금) 14:00
 - 장 소 : 위덕대학교 성취관 4층
 - 참 석 : 김명호 의원

- 2013 구룡포 과메기축제&겨울바다 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3. 12. 29(일) 18:00
 - 장 소 : 영일대해수욕장
 - 참 석 : 장경식·김말분·장세헌 의원

- 2014 갑오년 해맞이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1(수) 06:30
 - 장 소 : 마현산전적비 일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 성주군 충혼탑 참배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2(목) 08:30
 - 장 소 : 성주읍 예산리 충혼탑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울진군 기관단체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2(목) 11:00
 - 장 소 : 울진군민체육관
 - 참 석 : 황이주 의원

- 영양군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2(목) 15:00
 - 장 소 : 영양군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용 의원

○ 문경시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1:00
- 장 소 : 문경 문화원 대강당
- 참 석 : 고우현 의원

○ 북포항 청년회의소 신년 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1:00
- 장 소 : 포항 흥해읍사무소
- 참 석 : 한창화 의원

○ 봉화청년회의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1:00
- 장 소 : 봉화군청 대회의실
- 참 석 : 권영만 위원장

○ 의성군 신년 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2:00
- 장 소 : 의성 군민회관
- 참 석 : 나현아·이왕식 의원

○ 재구미 예천군민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4. 1. 3(금) 19:00
- 장 소 : 구미웨딩
- 참 석 : 도기욱 의원

- 김천시 2014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4(토) 11:00
 - 장 소 : 김천 탑웨딩 신관3층 대연회장
 - 참 석 : 배수향 의원

- 경산시장 읍·면·동 방문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7(화) 10:00
 - 장 소 : 경산 하양읍사무소
 - 참 석 : 김영식 의원

- 예천군 육상인의 밤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7(화) 18:30
 - 장 소 : 예천 예천웨딩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노인대학 개강식 참석
 - 일 시 : 2014. 1. 8(수) 10:00
 - 장 소 : 고령군 노인회관
 - 참 석 : 곽광섭 의원

- 구룡포 개발자문위원회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8(수) 11:00
 - 장 소 : 포항 구룡포읍사무소
 - 참 석 : 이정호 의원

- 2014 인동지역 합동 신년 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8(수) 11:00
 - 장 소 :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 참 석 : 장영석 의원

- ‘신 정동진’ 사업 주민설명회 참석
 - 일 시 : 2014. 1. 9(목) 10:00
 - 장 소 : 축산면사무소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9(목) 10:30
 - 장 소 : 경산인터블고CC
 - 참 석 : 김창숙·윤성규 의원

- 2014년 양포동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9(목) 11:00
 - 장 소 : 구미 양포동 주민센터
 - 참 석 : 변우정 의원

- 구미 상모 사곡동 발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1. 9(목) 17:30
 - 장 소 : 상모사곡동사무소 2층 회의실
 - 참 석 : 구자근 의원

- **문경시 여성단체협의회 신년하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11(토) 11:00
 - 장 소 : 문경시 여성회관
 - 참 석 : 이시하·이경임 의원

- **안동 암산 얼음축제 참석**
 - 일 시 : 2014. 1. 11(토) 10:00
 - 장 소 : 남후면 암산유원지
 - 참 석 : 이영식 의원

- **경북장로총연합회 제18차 수련회 및 신년인사회 참석**
 - 일 시 : 2014. 1. 13(월) 18:00
 - 장 소 : The-K 경주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경산시장 읍·면·동 방문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14(화) 11:00, 1. 21(화) 14:00
 - 장 소 : 남부동(1. 14), 중앙동(1. 21)
 - 참 석 : 서정숙 의원

- **포항시 체육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14(화) 12:0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구미 고아음발전협의회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1. 16(목) 11:00
 - 장 소 : 고아읍사무소
 - 참 석 : 김봉교 의원

-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경산지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4. 1. 16(목) 11:00
 - 장 소 : 경산 인터블고CC
 - 참 석 : 배한철 의원

- 군위 효령파출소 여성자율방범대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1. 17(금) 14:00
 - 장 소 : 효령면사무소 2층
 - 참 석 : 홍진규 의원

-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4. 1. 18(토) 15:00
 - 장 소 : 경주 위덕대학교
 - 참 석 : 최학철 의원

-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4. 1. 20(월) 14:00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동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상주시 청리면 주민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4. 1. 20(월) 10:00
 - 장 소 : 상주 청리면사무소
 - 참 석 : 강영석 의원

- 다문화가정 송년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20(월) 11:00
 - 장 소 : 울릉군 대아리조트
 - 참 석 : 이용진 의원

- 경산 하양공설시장 장보기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21(화) 10:00
 - 장 소 : 하양공설시장
 - 참 석 : 김세호 의원

- 성주소방서 성주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4. 1. 21(화) 11:00
 - 장 소 : 성주웨딩
 - 참 석 : 정영길 의원

- 2014 청송군 군민과 대화의 날 참석
 - 일 시 : 2014. 1. 21(화) 09:40
 - 장 소 : 현서면사무소
 - 참 석 : 김영기 의원

- 남정면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1. 21(화) 11:00
 - 장 소 : 영덕소방서 대회의실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온정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 일 시 : 2014. 1. 22(수) 11:00
 - 장 소 : 온정119안전센터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경주시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4. 1. 23(목) 18:00
 - 장 소 : 경주 The-K호텔
 - 참 석 : 최우섭 의원

- 구미경찰서 자율방법연합회 신년교례회 참석
 - 일 시 : 2014. 1. 23(목) 18:30
 - 장 소 : 호텔 금오산
 - 참 석 : 윤창욱 의원

- 구미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4. 1. 27(월) 11:00
 - 장 소 : 선산종합시장, 신평시장
 - 참 석 : 심정규 의원

○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대구경북 시민모임

- 일 시 : 2014. 1. 29(수) 11:00

- 장 소 : 카톨릭근로자회관 강당

- 참 석 : 김창숙 의원

○ 칠곡 기산공단기업인회관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4. 2. 4(화) 15:00

- 장 소 : 칠곡군 기산면 일원

- 참 석 : 김희원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4년 2월 6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도립의료원 경쟁력 강화 촉구>>

영양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의 특성화된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된 이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의료원으로서의 특성화된 역할이 부족했거나, 부실 운영에 대하여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상북도에도 3개 도립의료원이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이 1912년, 김천의료원이 1921년, 포항의료원이 1939년에 설립되어 당시 부족하고 열악했던 의료 환경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인프라가 매우 부족했던 시대와 현재는 의료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포항의 경우 14개 병원, 2352병상, 약 1,618명의 의료인력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안동의 경우 7개병원, 2434병상, 855명의 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또한 포항과 안동의료원은 진료과목도 지역 민간병원과 차별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경우도 민간 병원 수는 적으나 인접한 구미지역에 대형 민간 병원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 수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으로 인근 다른 시·군의 주민들은 도립 의료원 이용이 낮은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운영상의 부실로 이어져 2012년 기준 부채가 포항의료원 37억원, 김천의료원 157억원, 안동의료원 7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3개 의료원 순 손익이 6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3개 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은 포항의료원 4억 4000만원, 김천의료원 3억 1000만원, 안동의료원 11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4%, 0.7%, 3.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료 인프라와 인력 등은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3개 도립의료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발전방안이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공공성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민간 의료 서비스가 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공공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민간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도립의료원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지사께서는 3개 의료원의 의료 환경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의료원별로 특성화하거나 차별화된 의료원 발전전략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치료 또는 재활 등의 병원으로 차별화하는 방안 모색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3만 3000명이던 치매환자가 지난해 4만 3000명으로 급증하여 경상북도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기 암환자 등을 위한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3개 의료원의 진료과목은 해당지역 민간 의료서비스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민간 의료 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진료보다는 치매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치매 어르신의 어려움과 보호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치매전문 병원으로 특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과의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화된 협업을 통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호스피스병동 등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을 분석하여 향상된 의료원 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대책 수립과 더불어 지방 공공기관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대책 수립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의료원에 대해서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할 때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결과가 경상북도에서도 재현될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3개 도립의료원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도지사 및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대구 취수원 관련>>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봉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필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새해 제26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갑오년 새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새로운 천년 희망찬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명품교육을 통해 인재양성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민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취수원 이전을 전제로 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예산 10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취수원 이전 예비타당성 기초조사에 사용할 방침에 있습니다. 정부차원 관련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취수원 이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대구시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구시장 출마예상자들도 앞다투어 대구 취수원 이전 공약을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구미시민, 그리고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는 고령, 성주, 칠곡 등 지역 도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특히 많은 구미시민들과 구미시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량이 얼마나 될지 단언할 수도 없고 여름철에는 녹조까지 발생하는 등 수질변화가 심한 현재 상황에서 취수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논리만 내세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구시가 구미지역으로 취수원을 옮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옮기고자하는 구미시와 가장 먼저 협의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물론 경상북도와의 협의나 문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사업비는 3,483억원이며, 완공 시기는 2016년 말로 잡고 있다. 이미 수자원개발 테스트포스팀을 구성하였다.'는 등을 이야기하면서 취수원 이전을 아예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의 고위 공무원은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구미시와 갈등요인이 없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위치는 해평면 문량리 인근지역이라는 등 일방적인 판단을 하는가 하면, "2015년 초에는 취수원 이전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본다."는 등의 언론플레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대구광역시의 태도와 입장인지, 그리고 합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처사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2009년 낙동강 다이옥신 파동 이후 대구시는 당시 국토해양부와 함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구미시와 사전협의 없이 2010년 8월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2011년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서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1월에는 대구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아가서 대구취수원 이전을 일방적으로 건의하여 지역 간 첨예한 갈등만 조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정책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은 구미시, 나아가서 경상북도와 사전 협의 및 갈등 조정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고 대구시가 만약 취수원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구미시, 경상북도,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성실하게 사전 협의부터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구미시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계획은 해결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취수원 이전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식수 부족 문제와 함께 4대강 사업 준공 이후 수질악화 등

구체적인 정부 감사자료 등을 가지고 낙동강의 유량, 수질변화, 환경문제, 위치문제, 민원 등의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취수원 이전문제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년 2월 17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촉구>>

문경 출신 비례대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북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 경력단절 여성 통계를 보면(통계청), 15세에서 54세 까지 기혼여성은 971만 3천명에 이르고, 취업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은 406만 3천명(41.8%)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경력단절 여성 195만 5천명으로 기혼여성의 2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결혼 45.9% (89만 8천명), 육아 29.2%(57만 1천명), 임신·출산 21.2% (41만 4천명), 자녀교육 3.7%(7만 2천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경력단절여성 현황을 보면, 경기도 58만 2천명(29.8%), 경남 12만 6천명(6.4%)에 이어, 경북도는 8만 7천명(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성의 68.6%보다 높은 반면, 대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9%로, 남성 89.5%보다 25.6%가 낮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 79.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여성 가족부). 특히 심각한 것은 고학력 여성들의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석·박사 학위까지 갖고도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이 9만 559명으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기혼 여성 10명 중 3명 꼴(31.4%)로 일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반면, 석·박사 학위를 가진 미혼 여성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비율이 14.5% (1만 2,250명)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재취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의 경우 석·박사 학위를 갖고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이 어려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2014. 1. 3일자).

경북의 여성 취업자의 학력별 구성비를 보면, 중졸 이하 39.4%, 고졸 32.7%, 대졸이상 27.9%로 나타나, 고학력 여성이 상대적

으로 작은 수준이지만, 이는 학력이 높은 30대를 기점으로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학력이 낮은 고령층의 농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40대 이후 20대 보다 높은 수준으로 회복하는 반면, 대졸 이상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30세를 기점으로, 고용률이 10% 이상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하여 전형적인 L자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경북의 대졸 이상 여성 취업률은 27.9%로, 전국 평균(대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3.9%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면서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임금 비정규직은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북도가 운영하는 경북새일본부 취업설계사의 경우, 대부분 대졸 이상 고학력으로 8시간 이상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설계사가 비정규직이다 보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과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관용 도지사와 관련부서에는 이와 같은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의 일자리(직장)에서 단축근무제 도입, 육아휴직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정책을,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결혼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주부에게도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과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도 중요합니다. 결혼과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된다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을 거듭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명품이 아닌 싸구려가 된 경북교육>>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엇그저께 폭설피해지역인 울진에 새누리당 당대표이신 황우여 대표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다른 바쁜 일정을 뒤로 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동행해 주신 김관용 지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멀리서 보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나 실제로 가까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명품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바로 100m 미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단상에 서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일부만을 보고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아닌지, 또 주변의 여러 분들의 만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선출직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장을 비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진의 현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원자력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이 사진은 실습실 옥상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
시피 이렇게 많이 크랙이 가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 이곳은 생활관 채광창 부분입니다. 가로 세로 1m가
넘는 채광창 6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섯 군데 모두가
다 크랙이 갔고 심지어 이쪽 부분 목재 조립을 좀 조악하게 했습
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기도 했고요. 여기 보이는 어두운 선은
틈입니다, 구멍입니다. 메우지를 못 했습니다. 이쪽 부분도 마찬
가지입니다.

다음은 샤워장입니다만 이쪽 부분 좀 확대해서 보이실지 모르
겠습니다만 실리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실리
콘 작업을 했습니다만 공극이 너무 커서 메워지지를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장, 이 부분도 볼트를 채워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관의
1층과 2층을 잇는 계단 천장부분입니다. 이번에 내린 눈으로 벌써
이렇게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앞장으로 한번 돌려봐 주십시오.
생활관 1층, 2층, 3층, 4층의 현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
시피 이렇게 누렇게 이미 변색이 되었습니다. 여러 현장들이 많
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3년 12월 10일이었
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일은 올 1월 23일입니다.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2월 5일까지 현장에는 공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현장공정을 기록한 감리일지조차도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비상주지만 감리도 있었고 또 분야별 도교육청 감독관도 있었고, 해당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직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 무더위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우리 도교육청은 공기연장을 12일이나 해 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기, 기계 같은 경우도 준공허가 전에 전기, 기계 준공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학생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역경제를 역행하는 하도급 업체 선정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의 경우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 절반이 경북이 아닌 대구업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개관식 일정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울진군수와 또 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개관식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의 취업을 연계해야 되는데 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인 만큼 한수원과 한전KPS 경영진들이 참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현장에는 그분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초청장을 보낼 때 우리가 한 달 전이라도 미리 그분들의 일정을 감안해서 보냈더라면 또 그렇지 않다면 저희 같은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켜 주었더라면, 또 그분들이 바빠서 도저히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삼고초려 하는 입장에서 아이들 취업을 부탁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을 모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4년 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도민들 앞에 선서했던 그 선언문 때문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들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7건

■ 조 례 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98명”을 “5,10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24명”을 “1,934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합계란 “5,098”을 “5,108”로, 일반직 소계란 “1,791”을
“1,801”로, 일반직 5급 이하 중 합계란 “1,689”를 “1,699”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098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924명</p> <p>2. ~ 4. (생략)</p> <p>[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합 계</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의회</th> <th style="width: 10%;">직속 기관</th> <th style="width: 10%;">사업 소</th> <th style="width: 10%;">경제 자유 구역 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5,09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 반 직</td> <td>소 계 1,79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5급 이하 1,68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경제 자유 구역 청	합 계	5,098						·							일 반 직	소 계 1,791				-		·							·	5급 이하 1,689						·							·							<p>제 2 조(정원의 총수) ----- ----- 5,108명 ----- -----.</p> <p>1. ----- : 1,934명</p> <p>2. ~ 4. (현행과 같음)</p> <p>[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합 계</th> <th style="width: 10%;">본청</th> <th style="width: 10%;">의회</th> <th style="width: 10%;">직속 기관</th> <th style="width: 10%;">사업 소</th> <th style="width: 10%;">경제 자유 구역 청</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5,10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 반 직</td> <td>소 계 1,80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5급 이하 1,69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경제 자유 구역 청	합 계	5,108						·							일 반 직	소 계 1,801				-		·							·	5급 이하 1,699						·							·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경제 자유 구역 청																																																																																																											
합 계	5,098																																																																																																																
·																																																																																																																	
일 반 직	소 계 1,791				-																																																																																																												
·																																																																																																																	
·	5급 이하 1,689																																																																																																																
·																																																																																																																	
·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 소	경제 자유 구역 청																																																																																																											
합 계	5,108																																																																																																																
·																																																																																																																	
일 반 직	소 계 1,801				-																																																																																																												
·																																																																																																																	
·	5급 이하 1,699																																																																																																																
·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경상북도중소기업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을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으로,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각호”를 “각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제14조의 규정”을 “제2조”
로, “자”를 “사람”으로, “자들”을 “사람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 규정”을 “에”로,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지원
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매회계년
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회계년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항 제1호 중
“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
자본부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후임위원”을 “후임 위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 장학금지급대상자”를 “사람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중·고등·대학생”을 각각 “고등·
대학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
자”를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투자유치본부장”을 “일자리투자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매회계년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당해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상북도중소기업 근로자자녀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양적 및 질적 정의를 포괄 하는 기업을 말한다.</p> <p>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p> <p>제 1 조 (목적)----- ----- ----- ----- 해당 ----- ----- ----- 경상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p> <p>제2조(정의) ----- ----- 뜻은 --- 각 호 ----- .</p> <p>1. ----- 이란 ----- 제3조에 따른 ----- ----- .</p> <p>2. ----- 란 ----- 제2조 ----- 사람으 ----- ----- 사람을 ----- .</p>

현행	개정안
<p>3. “장학금”이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수업료(등록금), 육성회비, 학생회비 등 학자금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략)</p> <p>3. 기타 수익금</p> <p>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p> <p>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③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입금의범위 안에서 운용하며, 기금증식을 위하여 일정액을 재적립할 수 있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당해년도 사용계획</p>	<p>3. 이란 에 고등학생 학교운영지원비</p> <p>제 3 조(기금의 조성) 각 호</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의</p> <p>② 회계연도마다</p> <p>제 5 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회계연도마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 해당년도</p> <p>④ 각 호</p> <p>1. 해당년도</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② (생 략)</p> <p>③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p>1. (생 략)</p> <p>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④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 략)</p> <p>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p> <p>제8조(위원회의 운영)</p> <p>①~② (생 략)</p> <p>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6 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_____</p> <p>— <u>일자리투자본부장</u> _____</p> <p>_____ <u>각 호- 사람</u> _____</p> <p>_____.</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에</u> _____</p> <p>— <u>사람</u> _____</p> <p>④_____</p> <p>_____ <u>후임 위원</u> _____</p> <p>_____.</p> <p>제 7 조(위원회의 기능) _____</p> <p>_____ <u>각 호</u> _____</p> <p>_____.</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_____</p> <p>_____</p> <p>제 8 조(위원회의 운영)</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_____</p> <p>_____ <u>범위에서</u> _____</p> <p>_____.</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장학금 지급대상자추천) 시장·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도내 장학금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자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금지급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감, 근로자단체, 경영자단체,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의장에게 그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p> <p>1.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u>중·고등·대학생</u></p> <p>2. 기업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에 이바지한 근로자의 자녀인 <u>중·고등·대학생</u></p>	<p>제 9 조(장학금 지급대상자추천) ——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u>사람을 장학금 지급대상자</u> —— —— —— —— 1. —— —— <u>고등·대학생</u> 2. —— —— <u>고등·대학생</u></p>
<p>제10조(장학금 지급 및 대상자 선발)</p> <p>①(생 략)</p> <p>②장학금 지급대상자는 <u>제9조의 규정</u>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발한다.</p> <p>③제1항 및 <u>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선발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장학금 지급 및 대상자 선발)</p> <p>①(생 략)</p> <p>②—— <u>제9조에 따라</u> —— —— —— ③—— <u>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u> —— —— ——</p>

현행	개정안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운용한다.</p> <p>1. 기금운용관 : 투자유치본부장</p> <p>2. (생략)</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_____ _____ 각호 _____.</p> <p>1. _____ 일자리투자본부장</p> <p>2. (현행과 같음)</p> <p>제12조(결산 및 보고) ①_____ _____ 회계연도마다 _____ _____.</p> <p>②_____ 회계연도마다 _____.</p>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조직)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4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특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담당관·도시계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당해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관련자 등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④위촉직 위원 중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 유비쿼터스도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그 소속 공무원
2. 해당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시행자

제 6 조(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회의)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실무협의회)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건축조례”를 “경상북도 건축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영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 40인 이내”를 “40명 이상 60명 이하의”로, “50인”을 “50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및 경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를 “, 통신, 설비 등과 경관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로 한다.

제4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3회”를 “1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영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로, “16층”을 “21층”으로, “3만 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가 등 부속건물의 변경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6 제1항에 따라 도 위원회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전문위원회의 구성은”을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건축전문위원회”를 “분야별전문위원회”로, “10인 이내로 하고 도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를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5조의5 제6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20명이 내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심의위원 명단이 구성되면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계획의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 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⑤제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경상북도 건축조례</p> <p>제 3 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위원회(이하 “도 위원회”라 한다)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이하 “청 위원회”라 하며, 도 위원회와 청 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 4 조(구성 등) ①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 위원회는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은 건축·토목·조경·도시계획·문화재·에너지·소방·교통·예술·환경 및 경관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 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청 위원회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가 된다.</p> <p>③위원은 도 소속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생략)</p>	<p>경상북도 건축 조례</p> <p>제 3 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영 제5조의5에 따라</p> <p>제 4 조(구성 등) ①..... 1명..... 40명 이상 60명 이하의 50명 ②..... 통신, 설비 등과 경관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도 소속 과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③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제 5 조(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생략)	제 5 조(임기) ①..... 3년 1회 ②(현행과 같음)
제 6 조(기능) ①(생략) 1. (생략) 2.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②(생략) ③(생략) 1 ~ 3 (생략)	제 6 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21층 10만제곱미터 3 ~ 5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상가 등 부속건물의 변경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제 7 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위원회에 건축전문	제 7 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6 제1항에 따라 도 위원

현행	개정안
<p><u>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이하 “각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②각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고 도 위원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p> <p>2. (생략)</p> <p>3.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p> <p>4 (생략)</p> <p>③~⑤(생략)</p> <p>⑥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공디자인 정책 등에 관한 사항</p> <p>2. 건설, 건축 및 도시 관련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3. 공공디자인전문위원회의 자문대상,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⑦(생략)</p>	<p><u>회에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②… 전문위원회는 필요시 구성, 운영하며, …….</p> <p>1. 분야별전문위원회 …………… ……………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전문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4. (현행과 같음)</p> <p>③~⑤(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⑦(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9조(회의) ①(생략)</p> <p>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9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영 제5조의5 제6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심의위원 명단이 구성되면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계획의 작성자와 함께 참석하여 건축 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p> <p>⑤제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2조의2(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p> <p>①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p>

현행	개정안
	<p><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3. <u>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4. <u>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u> 5. <u>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u> <p>②<u>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기피</u></p>

현행	개정안
	<p><u>신청을 할 수 있고, 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u>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u></p>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상북도의회 의견제시(조건부 찬성)

1.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

-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개발시대에 형성된 포항, 구미 등 중·소도시와 산악지형과 동해안을 따라 형성된 소도시 군락으로 이루어진 지역의 광역적인 건축기본계획 및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계획임.
- 또한 우리 도에 산재한 문화재가 전국의 17%로 최다이고 고택의 40%, 서원·향교 등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유교, 불교, 가야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 ⇒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우리 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
 - ⇒ 한옥 등 전통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 할 것

○ 경상북도 건축기본계획은 국가차원에서 마련한 건축정책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하고,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향해야 할 건축·도시 관련 정책의 틀을 마련 하는 것이므로

⇒ 도청 및 23개 시·군이 향후 지향하거나 해야만 하는 건축·도시 관련 사업 및 과제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상북도만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본 건축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23개 시·군간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력, 도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것

○ 건축기본계획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건축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디자인 유형별 설계지침대로 시행할 경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건축기본계획을 규제나 강제사항으로 실행하기 보다는 권장이나 유도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 하는”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단체”라 함은”을 ““청소년단체”란”으로, “규정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료”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료”란 제1호에 따라”로 한다.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를 “청소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을 “제1항의”로, “관장업무”를 “업무”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는 “각 호”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의 사용 등”을 “청소년시설의 사용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이하 “수련센터”라 한다)를”을 “청소년시설을”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를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로, “원장은”을 “청소년시설의 장”으로, “3일전”을 “2일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50퍼센트”를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6. 「의사상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7.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
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임산부

제7조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로, “면제 감면”을 “면제 또는 감면”으로 한다.

제8조 전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수련센터”를 “청소년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9조 중 “수련센터”를 “청소년시설”로, “승인없이”를 “승인 없이”로,

“전대할 수 없다.”를 “다시 빌려 줄 수 없다”로 한다.

제10조 중 “수련센터의 사용자가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이거나”를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를 “위반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 중 “수련센터의”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1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2.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사업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연직이사”를 “당연직 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

7.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감사 2명은 회계 또는 세무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과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원장”을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과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번만”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이사와 감사”를 “이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과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원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과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개시 3월전까지”를 “개시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3월”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이 조례”를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와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과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으로 본다.

[별표 1]

경상북도 청소년시설(제3조 관련)

명 칭(기능)	위 치	비 고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	
경상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관련 교육)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안동시 축제장길 20	진흥원내에 상담 복지센터와 활동 진흥센터를 둔.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문제 상담 활동)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상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 활성화 지원)	안동시 축제장길 20	
경상북도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 성문화 관련 교육)	안동시 퇴계로 149-3	
경상북도 청소년여자쉼터 (여자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안동시 태사길 53-9	
경상북도 청소년남자쉼터 (남자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구미시 형곡로 158	
경상북도 아동청소년쉼터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 1길 593-4	

[별표 2]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

1. 청소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숙 박 비 (1박)	식 비 (3식)	시설이용비 (1박2일)	수련지도비 (1박2일)	합 계 (1박3식)
초등학생	4,400	10,800	2,400	2,400	20,000
중 학 생	4,700	11,400	2,500	2,400	21,000
고등학생	5,300	11,700	2,600	2,400	22,000
대 학 생	5,800	12,000	2,800	2,400	23,000

- 주) 1. 초등학생 미만은 초등학생 요율을, 그 이외의 청소년은 대학생 요율을 적용한다.
2. 식비와 수련지도비는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비는 1식당 요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청소년 이외의 사람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적용기준	금 액	기준초과	금 액	비 고
숙 박 비	8인실/1실/1박 (28.1㎡)	50,000	-	-	
	20인실/1실/1박 (67.5㎡)	100,000	-	-	
식 비	1식/1인	5,000	-	-	
시설 이용비	강당(대) (588㎡)	4시간까지/1실	200,000	초과시간당	40,000
	강당(중) (443㎡)	4시간까지/1실	150,000	"	30,000
	강당(소) (170.10㎡)	4시간까지/1실	100,000	"	20,000
	강의실 (84.4㎡)	4시간까지/1실	50,000	"	10,000
	운동장	4시간까지/1개	100,000	"	10,000
장비 이용비	MTB	4시간/1대	6,000	"	2,000
	빔프로젝터	4시간/1대	10,000	"	5,000
프로 그램 이용비	챌린지코스	1회/1인	20,000	-	-
	수상훈련	1회/1인	20,000	-	-
	서바이벌게임	1회/1인	20,000	-	-
	짚라인	1회/1인	20,000	-	-
	캠프파이어	재료비/1회	100,000	-	-
폭죽/1개		50,000	-	-	

- 주) 1. 숙박비의 1박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2. 강당과 강의실을 냉난방하는 경우와 운동장을 야간조명하는 경우에는
 효율의 20%를 가산한다.
 3. 강당·강의실 이외 건물내부시설은 강의실 효율을 적용하고, 운동장 이외
 건물외부시설은 운동장 효율을 적용한다.
 4. 프로그램 이용은 종목별로 50명 이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u>청소년기본법</u>」 제18조 및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목적) …………… 「<u>청소년기본법</u>」, 「<u>청소년활동진흥법</u>」, 「<u>청소년복지지원법</u>」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가 설치하는 …………… …………… …………….</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청소년시설</u>”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u>청소년기본법</u>」, 「<u>청소년활동진흥법</u>」 및 「<u>청소년복지지원법</u>」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수련, 상담 또는 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2. “<u>청소년단체</u>”라 함은 「<u>청소년기본법</u>」 제3조제8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p> <p>3. “<u>사용료</u>”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p>	<p>제 2 조(정의) …………… …………… 뜻은 …………….</p> <p>1. “<u>청소년시설</u>”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의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p> <p>2. “<u>청소년단체</u>”란 …………… …………… 따른 …………….</p> <p>3. “<u>사용료</u>”란 제1호에 따라 …………… …………… …………….</p>
<p>제 3 조(설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p>	<p>제 3 조(설치) ①……………</p>

현 행	개 정 안
<p>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p> <p>1.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의 소재지는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120번지에 둔다.</p> <p>2.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를 두고, 센터 내에 경상북도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와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두며, 소재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신안동 290-3번지에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 시설의 기능 및 관장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5 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제2장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의 사용 등</p> <p>제 6 조(사용허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이하 "수련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p>	<p>..... 청소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p> <p><삭 제></p> <p><삭 제></p> <p>②제1항의 업무</p> <p>제 5 조(청소년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제2장 청소년시설의 사용 등</p> <p>제 6 조(사용허가) ①제3조의 청소년시설을 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p>

현행	개정안
<p>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허가 여부를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7 조(사용료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또는 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별표”의 식비를 제외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가정의 청소년</p> <p>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p> <p>.....</p> <p>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의 장은 2일전</p> <p>제 7 조(사용료 등) ①제6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한</p> <p>.....</p> <p>②.....</p> <p>.....</p> <p>별표 2</p> <p>.....</p> <p>③..... 각 호</p> <p>.....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p> <p>5. (현행과 같음)</p> <p>6.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p> <p>7.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등 기증자</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생략)</p> <p>④(생략)</p> <p>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8 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p> <p>1. 수련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p> <p>2.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 9 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수련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p>	<p>8.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임신부</p> <p>9.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 … 면제 또는 감면 …… ….</p> <p>제 8 조(사용료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청소년시설 …… ….</p> <p>2. …… 취소원을 제출 한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p>②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일수를 일할 계 산하여 반환한다.</p> <p>제 9 조(사용권리의 양도금지 등) 청소년 시설 ……</p>

현행	개정안
<p>자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p>	<p>…… 승인 없이 …… …… 다시 빌려줄 수 없다.</p>
<p>제10조(사용제한) 수련센터의 사용자가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제한)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염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 …… 위반한 때에는 …… …… …….</p>
<p>제11조(변상책임) 수련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p>	<p>제11조(변상책임) 제6조에 따라 …… …… …… …….</p>
<p>제14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법인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4조(정관에 관한 사항) ①법인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업)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p>	<p>제15조(사업)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라 …… …… 2.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p>

현행	개정안
<p><u>지도자의 양성·연수</u></p> <p>3. 도지사가 정하는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사항</p> <p>4. (생략)</p> <p>②(생략)</p> <p>제17조(임원의 선임) ①~② (생략)</p> <p>③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위촉직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이사회 회의 선임 없이 <u>당연직이사</u>가 되며, 위촉직 이사는 청소년육성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1~2 (생략)</p> <p>3.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p> <p>4.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p> <p>5. (생략)</p> <p>6.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원장</p> <p>7.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원장</p> <p>④감사 2인 중 1인은 경상북도 감사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제1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이사의</p>	<p><u>보호와 관련된 사업</u></p> <p>3.</p> <p>..... 사업</p> <p>4.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17조(임원의 선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 <u>당연직 이사</u></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보건복지국장</u></p> <p><u><삭제></u></p> <p>5. (현행과 같음)</p> <p>6.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장</p> <p>7.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장</p> <p>④감사 2명은 회계 또는 세무분야 전문가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제1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p>

현행	개정안
<p>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u>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u>원장과 <u>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u>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②(생략)</p>	<p>.....</p> <p>..... <u>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u>과 <u>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u> 한번만</p> <p>.....의</p> <p>사.....</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직원 임면) 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u>원장과 <u>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u>원장은 도지사가 임면한다. 단, 임명의 경우에는 공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가 임명한다.</p> <p>③(생략)</p>	<p>제20조(직원 임면)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u>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장</u>과 <u>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장</u>은</p> <p>.....</p> <p>.....</p> <p>.....</p> <p>③(현행과 같음)</p>
<p>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p> <p>.....</p> <p>..... 개시 전까지</p> <p>.....</p> <p>②.....</p> <p>.....</p> <p>... 3월</p> <p>.....</p>
<p>제25조(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 ①법</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인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u>청소년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련센터 원장이 되고, 위원은 <u>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청소년시설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p>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u>청소년활동진흥법</u>」,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p>	<p>제26조(준용) <u>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 「<u>청소년활동진흥법</u>」, 「<u>청소년복지지원법</u>」, ……………</u></p> <p>……………</p> <p>……………</p> <p>……………</p>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6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도록 별표 2의 내용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별표 2”의 제목을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로 하고,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을 명시하고, “◆청소년 사용료”를
“1. 청소년 사용료”로 하며, “◆청소년 이외의 자 사용료”를 “2.
청소년 이외의 사람 사용료”로 함(안 제7조제1항의 별표 2).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 2”의 제목을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로 하고, “□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을 명시하고, “◆ 청소년 사용료”를 “1. 청소년 사용료”로 하며, “◆ 청소년 이외의 자 사용료”를 “2. 청소년 이외의 사람 사용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비고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사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청소년 사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숙박비 (1박)</th> <th style="width: 10%;">식 비 (3식)</th> <th style="width: 10%;">시 설 이용비 (1박2일)</th> <th style="width: 10%;">수 련 지도비 (1박2일)</th> <th style="width: 10%;">합 계 (1박3식)</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생</td> <td>4,400</td> <td>10,800</td> <td>2,400</td> <td>2,400</td> <td>20,000</td> </tr> <tr> <td>중 학생</td> <td>4,700</td> <td>11,400</td> <td>2,500</td> <td>2,400</td> <td>21,000</td> </tr> <tr> <td>고등학생</td> <td>5,300</td> <td>11,700</td> <td>2,600</td> <td>2,400</td> <td>22,000</td> </tr> <tr> <td>대 학생</td> <td>5,800</td> <td>12,000</td> <td>2,800</td> <td>2,400</td> <td>23,000</td> </tr> </tbody> </table> <p>주) 1. 초등학생 미만은 초등학생 요율을, 그 이외의 청소년은 대학생 요율을 적용한다. 2. 식비와 수련지도비는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식비는 1식당 요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p>	구 분	숙박비 (1박)	식 비 (3식)	시 설 이용비 (1박2일)	수 련 지도비 (1박2일)	합 계 (1박3식)	초등학생	4,400	10,800	2,400	2,400	20,000	중 학생	4,700	11,400	2,500	2,400	21,000	고등학생	5,300	11,700	2,600	2,400	22,000	대 학생	5,800	12,000	2,800	2,400	23,000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사용료</p> <p><input type="checkbox"/>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p> <p>1. 청소년 사용료</p> <p>〈표 내용은 개정안과 같음〉</p>	
구 분	숙박비 (1박)	식 비 (3식)	시 설 이용비 (1박2일)	수 련 지도비 (1박2일)	합 계 (1박3식)																											
초등학생	4,400	10,800	2,400	2,400	20,000																											
중 학생	4,700	11,400	2,500	2,400	21,000																											
고등학생	5,300	11,700	2,600	2,400	22,000																											
대 학생	5,800	12,000	2,800	2,400	23,000																											

개정안						수정안		비고	
◆ 청소년 이외의 자 사용료						2. 청소년 이외의 사람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적용기준	금액	기준 초과	금액	비고	〈표 내용은 개정안과 같음〉			
숙박비	8인실/ 1실/1박 (28.1㎡)	50,000	-	-					
	20인실/ 1실/1박 (67.5㎡)	100,000	-	-					
식비	1식/1인	5,000	-	-					
시설 이용비	강당(대) (588㎡)	4시간까지/ 1실	200,000	초과 시간당	40,000				
	강당(중) (443㎡)	4시간까지/ 1실	150,000	"	30,000				
	강당(소) (170.10㎡)	4시간까지/ 1실	100,000	"	20,000				
	강의실 (84.4㎡)	4시간까지/ 1실	50,000	"	10,000				
	운동장	4시간까지/ 1개	100,000	"	10,000				
장비 이용비	MTB	4시간/1대	6,000	"	2,000				
	빔프로젝터	4시간/1대	10,000	"	5,000				
프로 그램 이용비	챌린지코스	1회/1인	20,000	-	-				
	수상훈련	1회/1인	20,000	-	-				
	서바이벌 게임	1회/1인	20,000	-	-				
	짚라인	1회/1인	20,000	-	-				
	캠프라이어	재료비/1회 폭죽/1개	100,000 50,000	-	-				
<p>주) 1. 숙박비의 1박은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p> <p>2. 강당과 강의실을 냉난방하는 경우와 운동장을 야간조명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20%를 가산한다.</p> <p>3. 강당·강의실 이외 건물내부시설은 강의실 요금을 적용하고, 운동장 이외 건물외부시설은 운동장 요금을 적용한다.</p> <p>4. 프로그램 이용은 종목별로 50명 이상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p>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4년 2월 17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
구별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의원은 임기만료일
까지 종전 조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한다.

[별 표]

경상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합 계	247	총 정수 284인(비례대표 37, 지역구 247)
포항시 의원정수 32인(비례대표 4, 지역구 28)		
포항시“가”선거구	2	홍해읍
포항시“나”선거구	3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포항시“다”선거구	3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포항시“라”선거구	3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포항시“마”선거구	3	환여동, 장량동
포항시“바”선거구	2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포항시“사”선거구	3	상대동, 해도동
포항시“아”선거구	2	연일읍, 대송면
포항시“자”선거구	2	오천읍
포항시“차”선거구	3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포항시“카”선거구	2	효곡동, 대이동
경주시 의원정수 21인(비례대표 3, 지역구 18)		
경주시“가”선거구	2	황성동, 중부동
경주시“나”선거구	2	성건동, 현곡면
경주시“다”선거구	3	동천동, 황오동, 불국동, 보덕동
경주시“라”선거구	2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경주시“마”선거구	2	안강읍
경주시“바”선거구	2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
경주시“사”선거구	3	선도동, 건천읍, 산내면, 서면, 황남동
경주시“아”선거구	2	월성동, 내남면, 외동읍
김천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김천시“가”선거구	3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울곡동
김천시“나”선거구	2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김천시“다”선거구	2	자산동, 지좌동
김천시“라”선거구	2	대신동
김천시“마”선거구	3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김천시“바”선거구	3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안동시 의원정수 18인(비례대표 2, 지역구 16)		
안동시"가"선거구	2	북후면, 서후면, 송하동
안동시"나"선거구	2	옥 동
안동시"다"선거구	2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풍산읍
안동시"라"선거구	2	와룡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임동면, 길안면
안동시"마"선거구	2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안동시"바"선거구	2	용상동
안동시"사"선거구	2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안동시"아"선거구	2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구미시 의원정수 23인(비례대표 3, 지역구 20)		
구미시"가"선거구	3	도량동, 선주원남동
구미시"나"선거구	3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형곡2동
구미시"다"선거구	2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구미시"라"선거구	2	상모사곡동, 임오동
구미시"마"선거구	3	인동동, 진미동
구미시"바"선거구	3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구미시"사"선거구	2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구미시"아"선거구	2	고아읍
영주시 의원정수 14인(비례대표 2, 지역구 12)		
영주시"가"선거구	2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영주시"나"선거구	2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시"다"선거구	2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
영주시"라"선거구	2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
영주시"마"선거구	2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영주시"바"선거구	2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영천시 의원정수 12인(비례대표 2, 지역구 10)		
영천시"가"선거구	2	완산동, 남부동, 서부동, 북안면
영천시"나"선거구	3	금호읍, 대창면,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영천시"다"선거구	3	동부동, 중앙동
영천시"라"선거구	2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화북면, 화남면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상주시 의원정수 17인(비례대표 2, 지역구 15)		
상주시"가"선거구	2	함창읍,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상주시"나"선거구	2	외서면,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상주시"다"선거구	3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상주시"라"선거구	2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상주시"마"선거구	3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상주시"바"선거구	3	모동면, 모서면, 내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문경시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문경시"가"선거구	2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문경시"나"선거구	3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문경시"다"선거구	2	영순면, 산양면, 산북면, 동로면
문경시"라"선거구	2	호계면, 점촌1동, 점촌3동
경산시 의원정수 15인(비례대표 2, 지역구 13)		
경산시"가"선거구	3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
경산시"나"선거구	2	진량읍
경산시"다"선거구	2	하양읍, 와촌면
경산시"라"선거구	3	서부2동, 북부동, 압량면, 중방동
경산시"마"선거구	3	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군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군위군"가"선거구	3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군위군"나"선거구	3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의성군 의원정수 13인(비례대표 2, 지역구 11)		
의성군"가"선거구	3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의성군"나"선거구	2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의성군"다"선거구	2	봉양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의성군"라"선거구	2	구천면, 비안면, 안계면
의성군"마"선거구	2	단밀면, 단북면, 다인면
청송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청송군"가"선거구	3	청송읍, 파천면, 진보면
청송군"나"선거구	3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 거 구 역
영양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영양군"가"선거구	3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영양군"나"선거구	3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영덕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영덕군"가"선거구	3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영덕군"나"선거구	3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청도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청도군"가"선거구	3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청도군"나"선거구	3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고령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고령군"가"선거구	3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
고령군"나"선거구	3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성주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성주군"가"선거구	3	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성주군"나"선거구	2	용암면, 수륜면, 대가면
성주군"다"선거구	2	가천면, 금수면, 벽진면, 초전면
칠곡군 의원정수 10인(비례대표 1, 지역구 9)		
칠곡군"가"선거구	2	왜관읍
칠곡군"나"선거구	2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칠곡군"다"선거구	3	북삼읍, 약목면, 기산면
칠곡군"라"선거구	2	석적읍
예천군 의원정수 9인(비례대표 1, 지역구 8)		
예천군"가"선거구	2	예천읍
예천군"나"선거구	2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예천군"다"선거구	2	호명면, 지보면, 풍양면
예천군"라"선거구	2	용문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봉화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봉화군"가"선거구	2	봉화읍, 물야면
봉화군"나"선거구	2	봉성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봉화군"다"선거구	3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울진군 의원정수 8인(비례대표 1, 지역구 7)		
울진군"가"선거구	2	울진읍, 서면
울진군"나"선거구	2	북면, 죽변면
울진군"다"선거구	3	평해읍,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울릉군 의원정수 7인(비례대표 1, 지역구 6)		
울릉군"가"선거구	4	울릉읍
울릉군"나"선거구	2	서면, 북면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17일

제안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의 복수안(1, 2)으로 제출됨에 따라 단일안을 확정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 내용

- 별표(복수안 1, 복수안 2)를 1개의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일부 시군 선거구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비함(안 제2조 별표).

3. 수정안 : 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별표(복수안 1, 복수안 2) 중

포항시“자”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고, 포항시 “차”선거구의 의원정수 “2”를 “3”으로 한다.

- 안동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한다.
- 구미시 “바”선거구 의원정수 “4”를 “3”으로 하고, 구미시 “사”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을,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으로 하고, 구미시 “아”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고아읍”으로 한다.
- 영주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하고, 영주시 “라”선거구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풍기읍,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을,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으로 하고, 영주시 “마”선거구의 의원정수 “3”을 “2”로 하며, 선거구역 “이산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을,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으로 하고, 영주시 “바”선거구를 신설하여 의원정수 “2”로 하며, 선거구역을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으로 한다.

- 경산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의 복수안 1로 한다.
- 그 밖의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중 복수안 1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별 표]

경상북도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개 정 안(복수안 1, 복수안 2)			수 정 안		
포항시 의원정수 32인(비례대표 4, 지역구 28)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가"선거구	2	홍해읍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나"선거구	3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다"선거구	3	양학동, 용흥동, 우창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라"선거구	3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마"선거구	3	환어동, 장량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바"선거구	2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사"선거구	3	상대동, 해도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아"선거구	2	연일읍, 대송면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포항시"자"선거구	3	오천읍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2	개정안(복수안 1)과 같음
포항시"차"선거구	2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3	개정안(복수안 1)과 같음
포항시"카"선거구	2	효곡동, 대이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개 정 안(복수안 1, 복수안 2)		수 정 안	
1안			
안동시 의원정수 18인(비례대표 2, 지역구 16)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안동시"가"선거구	2 북후면, 서후면, 송하동		
안동시"나"선거구	2 옥 동		
안동시"다"선거구	2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풍산읍		
안동시"라"선거구	2 와룡면, 예안면,도산면, 녹전면,임동면,길안면		
안동시"마"선거구	2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안동시"바"선거구	2 용상동		
안동시"사"선거구	2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안동시"아"선거구	2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2안			
안동시 의원정수 18인(비례대표 2, 지역구 16)			
안동시"가"선거구	2 북후면, 서후면, 송하동		
안동시"나"선거구	2 옥 동		
안동시"다"선거구	2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풍산읍		
안동시"라"선거구	2 와룡면, 예안면,도산면, 녹전면,임동면,길안면		
안동시"마"선거구	2 남선면, 임하면, 강남동		
안동시"바"선거구	2 용상동		
안동시"사"선거구	4 태화동, 평화동,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안기동		
구미시 의원정수 23인(비례대표 3, 지역구 20)		개정안(복수안1안)과 같음	
구미시"가"선거구	3 도량동, 선주원남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개 정 안(복수안 1, 복수안 2)			수 정 안		
구미시"나"선거구	3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형곡2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구미시"다"선거구	2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구미시"라"선거구	2	상모사곡동, 임오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구미시"마"선거구	3	인동동, 진미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구미시"바"선거구	4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3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구미시"사"선거구	3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구미시"사"선거구	2	선산읍, 무을면, 옥성면
			구미시"아"선거구	2	고아읍
1안					
영주시 의원정수 14인(비례대표 2, 지역구 12)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영주시"가"선거구	2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영주시"나"선거구	2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영주시"다"선거구	2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영주시"라"선거구	3	풍기읍,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영주시"라"선거구	2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이산면
			영주시"마"선거구	2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영주시"바"선거구	3	이산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영주시"바"선거구	2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개 정 안(복수안 1, 복수안 2)		수 정 안		
2안				
영주시 의원정수 14인(비례대표 2, 지역구 12)				
영주시"가"선거구	2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영주시"나"선거구	4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		
영주시"다"선거구	3	풍기읍,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영주시"라"선거구	3	이산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1안				
경산시 의원정수 15인(비례대표 2, 지역구 13)		개정안(복수안1)과 같음		
경산시"가"선거구	3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		
경산시"나"선거구	2	진량읍		
경산시"다"선거구	2	하양읍, 와촌면		
경산시"라"선거구	3	서부2동, 북부동, 압량면, 중방동		
경산시"마"선거구	3	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2안				
경산시 의원정수 15인(비례대표 2, 지역구 13)				
경산시"가"선거구	3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		
경산시"나"선거구	4	진량읍, 하양읍, 와촌면		
경산시"다"선거구	3	서부2동, 북부동, 압량면, 중방동		
경산시"라"선거구	3	동부동, 중앙동,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의정 활동 보고서

(제267~270회 임시회)



2014. 6 인쇄 / 2014. 6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46

FAX : 602-5140



<비매품>